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공연구기관, 기술혁신사업자, 기술혁신사업화보증, 유동화보증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(안 제2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).
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3 신설).
-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도록 함(안 제27조의4).
-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수수료·보증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27조의4제1항은 현행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설치되어 있는 “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”의 명칭을 “기술혁신사업화 계정”으로 변경하고, 그 업무 범위에 기술의 사업화¹⁾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추가하고 있음.

1)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의4. “사업화”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·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
안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계정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명칭이 변경되므로, 종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과 기술혁신 사업화계정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는데,

이에 대하여 안 부칙 제2조는 개정법률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 기술 혁신 계정은 개정법률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보고, 종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권리·의무는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러나 ‘포괄승계’는 상속, 합병 등의 사유에 따라 ‘승계’가 이루어 질 때 인정되는 것으로서,

단순한 명칭 변경만이 있을 뿐 개정법률 시행 전후에 계정 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“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”과 “기술혁신사업화 계정”의 사이에는 권리·의무의 귀속 변경을 의미하는 ‘승계’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, 안 부칙 제2조 중 ‘포괄승계’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²⁾

2) 유사 입법례로 2025년 8월 26일 시행된 법률 제21038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및 그 부칙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교통시설특별회계법

제6조(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항공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10. (생략)

② (생략)

부칙

제3조(계정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항계정은 이 법에 따른 항공 공항계정으로 본다.

개 정 안	수정의견
부칙 제2조(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은 제27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본다.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·채무 및 그 밖의 권리·의무는 제27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 포괄승계한다.	부칙 제2조(계정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은 제27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본다. <u><삭 제></u>

-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